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. 9. 22 선고 2023가단62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3. 8. 25.

판 결 선 고 2023. 9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1,256,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용사업,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, 적금의 수납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와 수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.

나. D 주식회사는 2023. 4. 11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타채12361호로 채무자 피고, 제3채무자 원고, 청구금액 49,256,929원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, 위 명령은 2023. 4. 14. 원고에 송달되었다.

다.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지연하던 중 피고의 예금계좌에 189,005,300원이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출금되었다.

라. 원고는 2023. 4. 24. D 주식회사에 청구채권 잔액 41,256,929원을 지급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일방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하고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여전히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는바(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09다16766 판결,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등 참조),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게 되면 그 범위에서 앞서 변제를 받은 채무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.

나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에게 예금채권을 지급하더라도 D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, 이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D 주식회사에 41,256,929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, 원고는 위 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1,256,9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이행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3. 5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공민아